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연례공지

2025~2026학년도

친애하는 부모/보호자께,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48980은 정규 학교 기간의 1학기 또는 분기(쿼터)가 시작할 때, 교육법 특정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교육구 관리 이사회가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법의 다른 법률도 부모/보호자를 위한 공지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법 섹션 48982는 부모/보호자가 이 공지에 서명하여 학생의 학교에 제출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 공지에 서명하는 것은 학부모가 이 공지를 받았으며 또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명했다고 해서 여기에 제공되었거나 또는 제공되지 않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인정하였음을 나타내는 "Acknowledgment Form"에 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캘리포니아와 미국 법은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과 재학 중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구는 법의 요구대로 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법적 참조

약어

CCR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FR

연방 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

교육법 (Education Code)

ESSA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H&SC

보건 및 안전법 (Health & Safety Code)

IDEA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LC

노동법(Labor Code)

PC

형법(Penal Code)

§ 504

1973에 제정된 재활법의 제504조

USC

연방 법전 (United States Code)

W&IC

복지와 기관법 (Welfare & Institutions Code)

정식 명칭

[목차로 돌아가기](#)

학생 징계 (PUPIL DISCIPLINE)

학생 징계(PUPIL DISCIPLINE)와 관계된 규정(EC §§35291, 48980):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이사회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의 행정과 징계를 위한 규율을 정하였습니다. 학생 징계와 관계된 [규칙은 AUHSD 이사회 규정 87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품행에 대한 의무(EC §44807): 모든 교육구의 교사는 등하교, 운동장 및 쉬는 시간에 학생이 품행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의무 (EC §48908, 5 CCR §300):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엄수하여 학교에 출석하며, 교칙에 순응하고, 교사나 그 외 교직원의 모든 지시에 즉각 따르고, 순리적이며 예의 바른 행실을 지키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며 불경하고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총기의 안전한 보관 (EC §§48980, 48986, 49392): 아동의 무기 접근성 예방법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첨부 문서 #1를 참조하십시오.

복장 규정(EC §§35183, 35183.5, 51101):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귀 자녀 학교에서 도입한 복장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학교의 복장 규정은 본관 사무실에 비치 있습니다.

정학을 당한 학생의 부모/보호자의 출석 (EC §48900.1, LC §230.7):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교사가 자기가 정학 조치한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학생의 교실에서 학교 시간 중의 일정 부분을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어떤 고용주도 자신의 피고용인이 일하는 시간에 이 요청에 응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해고의 사유로 삼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전학 (EC §§48929, 48980): 자체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 이사회는 형법(PC) 667.5(c)에 정해진 것과 같이 폭력적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법 §29805에 명시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학생이 그 범죄의 피해자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을 교육구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8535](#)를 참조하십시오.

예의에 관한 규정(EC §44050): 교육구 자체 행동 강령에 학생과 교류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구의 섹션의 서면 사본은 이 통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9000\(CSBA 이사회 규정 1313\)](#) [예의](#)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기록 (PUPIL RECORDS)

학생 기록/학부모와 학생의 사생활 보장 권리에 대한 공지(EC §49063 et seq. seq., § 49069.7, § 49073, 34 CFR 99.30, 34 CFR 99.34, and the federal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 **학생 기록의 종류:** 학생 기록이란 일반적인 연락 정보(Directory Information) 외의 학생의 신원을 나타내는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서, 의무적으로 교육구에서 보관하거나 혹은 교육구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기, 인쇄, 녹음, 녹화, 소형 필름에 저장, 혹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학생 기록은 학생의 건강 기록까지 포함됩니다.
- **책임 담당 교직원:** 귀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학교에 비치된 학생 기록의 보관과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 사무실에 비치된 학생 기록 담당자는 교육분과 부교육감입니다.
- **일지/기록 보관 장소:** 법은 기록에 있는 정보나 합법적으로 이에 관계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사람, 기관 및 단체의 목록이 기록된 학생의 기록에 대한 일지 또는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 보관 중인 귀 자녀의 기록에 대한 일지는 교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구 사무실에 보관된 기록에 대한 일지는 교육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학교 교직원과 직원/합법적인 교육적 이해:** 학생 기록을 검토하도록 위임 받은 학교 교직원과 직원들은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와 관련된 학교 교직원들입니다. 학교 관계자란 교육구에서 행정인,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교직원, 또는 지원 교직원(협력 교육자, 보건 또는 의료직원 그리고 학교 법 집행 직원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 학교 이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교육구가 특별 업무(변호사, 감사, 의료 자문 위원, 교육 자문 위원 또는 치료사 등)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맺은 자, 납품업체, 도급업자, 또는 교육구가 외부 기관 서비스를 의뢰한 기관, 학생의 부양과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은 주 또는 지역 아동 복지 기관의 사례 담당자,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공공기관 및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구 학생을 등록할 의도가 있거나 등록하도록 지시한 공립학교나 학교 시스템, 기록 해당 미성년자의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접근 요청자의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와 관계된 기록에만 허용이 됩니다. 요청에 있을 시, 교육구는 학생이 등록하기 원하는 다른 교육구의 직원에게 동의가 없이도 학생의 교육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기관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076조에 명시된 자들이 포함됩니다.
- **기록에 대한 접근과 검토/말소의 권리:** 부모는 교육구에 보관된 학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흠티스 학생이나 청소년, 또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동반자가 없는 학생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자녀의 학교에 비치된 기록을 검토하기 원한다면 교장실로 연락하거나 검토하기 원하는 기록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육구에 비치된 기록의 열람을 원한다면, 교육분과 (714) 999-3586로 전화하십시오. 교장실 또는 교육구 사무실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간의 업무일 안에 기록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 관리 이사회에 의해 퇴학을 당한 학생이 그 재활 과제를 만족스럽게 이행함에 따라 이사회는 퇴학 과정의 일부, 혹은 그 기록 전부의 삭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카운티 교육청 이사회에서 교육구 이사회가 결정한 퇴학을 번복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개입한다면, 카운티 이사회는 교육구 관리 이사회에 학생의 기록과 퇴학 조치를 위해 교육구가 참조한 것의 기록을 말소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된 후 서면으로 동의 철회를 접수하면, 교육구는 귀 자녀가 특수 교육과 서비스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귀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 기록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EC § 49070): 학부모는 자신의 학생과 관련된 기록의 일부분을 수정, 혹은 삭제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추정될 때는, 학부모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하지 않은 정보, (2) 근거 없는 개인적인 결론이나 추정, (3) 관찰자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이나 추정, (4) 기록된 관찰 내용의 시간, 장소와 관계된 관찰자의 직접적인 목격을 토대로 하기 않았을 때, (5) 오도된 내용, 혹은 (6) 학생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에 위배된 기록 등
- 사본 복사 비용: 교육구는 재학생의 기록을 내부적으로 복사하는 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Parchment”를 통해 제공되는 재학생 기록에는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이 적용되며,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졸업생 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록의 양도: 교육구는 10일의 학교일 내에 귀자녀가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로 자녀의 영구 학생 기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불평/민원/이의 제기: 교육구가 연방 가족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 조항 준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 교과과정 안내서: 귀 자녀의 학교 교과과정은 해마다 편찬되며 이것을 귀 자녀의 학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조치에 대한 진술서나 응답: 귀 자녀와 연계되어 내려진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가 학생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는 자녀의 기록 안에 그 징계 조치에 대한 서면 진술서나 응답을 포함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 기록의 파기: 캘리포니아 주 규정에 따른 지침에 의해,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의무적인 학생 영구 기록(Class 1- 영구 기록)의 원본, 또는 그것과 똑같은 사본을 무기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학생 기록 (Class2-선택적 기록)은 더 이상 학생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기록이 Class 3, 즉 폐기해도 되는 기록이라고 재 분류될 때까지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5 CCR 432)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IDEA(장애인 교육법)은 특수 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기록은 파기하기에 전에 교육구가 일단 학생의 인적 정보가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보호자는 개인적으로 인적 정보가 필요치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기록의 파기 이전에 학생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구에서 이 정보가 앞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감사의 목적(34 CFR 300, 624, 5 CCR 16026)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 기록의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영구 기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학생의 기록은 교육 제공을 위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한 이후 5년이 지나면 모두 파기됩니다. (5 CCR 16027).

소셜 미디어 정보 (EC §49073.6):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학교나 학생의 안전과 연관된 정보만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의 사본은 교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디렉터리 정보 공개 (EC §49073): 디렉터리 정보는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도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란 학년 반지의 제조사, 학교 앨범 출판사, 드라마 제작에서 학생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 안내문; 우등생 명부나 다른 포상 명단들; 졸업 프로그램과 운동부 활동 기록부 등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나 앞으로의 고용주를 제외한 사적 영리업체, 신문, 잡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 어떤 뉴스 매체의 대표자에게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12학년에 등록한 학생들이나 졸업에 앞서 등록이 취소된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는 사립 학교나 대학교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학부모가 교육구에 자기 학생 정보 공개 금지를 요청한다면, 그 학생과 관련된 어떤 디렉터리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학생과 관련된 디렉토리 정보의 제공 금지를 원하시면, 귀 자녀의 학교 교장에게 서면 통보를 제출하십시오. 흠티스 아동이나 청소년의 디렉터리 정보 공개는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서면 동의를 주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지도 이니셔티브 (EC §§ 10861, 51225.7(f)(3), 51229(a)((6), 60900.5 & 69432.9(c)(2)(A)): 캘리포니아 대학 지도 이니셔티브(CCGI)는 www.CaliforniaCalleges.edu를 관리하며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공식 대학 및 커리어 계획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CCGI는 캘리포니아 교육구(CDE)로부터 현재 6학년부터 12학년에 등록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등록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된 데이터는 학생과 가족이 온라인 도구 및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학생이 CCGI와 공유한 정보를 (1) 진학과 학업 배정의 목적을 위해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2) 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지원 위원회에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20 USC §1232g):

연방법은 FERPA에 자녀의 학생 기록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ERPA 통지 모델을 열람하기 위해 별첨부록 #2를 참조하십시오.

모병관을 위한 정보 공개 (20 USC §7908): 연방법은 교육구가 모병관이나 상위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을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학교 교장에게 서면 통보를 제출하십시오.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신체검사 동의에 대한 거부(EC §§49451, 48980): 귀하는 귀 자녀 학교장에게 자녀의 신체검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한 서면 통보를 해마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인지된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학생은 귀가 조처될 것이며 학교 당국은 그 어떤 전염성 질병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을 때까지 그 학생의 학교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 및 가정 폭력 핫라인 (EC §§215.5, 48980): 전국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번호(1-800-273-8255)는 미국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7233)이 학생증 뒷면에 있습니다.

학생 정신 건강 서비스 (EC §§49428, 48980): 캠퍼스나 지역사회, 또는 두 곳 모두에서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처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와 학생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상태를 위한 지속적인 투약 계획 (EC §49480):

귀 자녀가 일시적이지 않은 상태를 위해 지속으로 투약해야 한다면, 귀하는 반드시 학교 양호 교사나 혹은 자격을 갖춘 담당 학교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투약해야 하는 약, (2) 현재 복용하고 있는 용량, (3) 담당 의사의 이름. 귀하의 동의를 받아, 교육구의 간호사는 학생의 주치의와 의견을 소통할 수도 있으며, 학생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인 행동, 그 약의 영향력이나, 부정적인 부작용이나 투약을 생략하거나 과다 복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 신호나 징후와 관련하여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 자녀가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공지 마지막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예방 접종제 투여 (EC §§49403, 48980):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의사나 외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면허를 받은 임상 간호사, 혹은 관리 의사의 지시 하에서 일하는 면허가 의료인이 학생에게 예방 접종제 투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학부모는 예방 접종제 투여를 서면으로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방 약 투약 관리(EC §§49403, 49423.1, 48980): 만약 귀 자녀가 정규 학교 시간에 처방약을 먹어야 한다면 귀하는 학교 양호 교사나 지명된 학교 직원에게 학생의 투약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협조를 원한다면, 의사와 외과 전문의, 혹은 보조 의사가 쓴 처방 약의 이름, 복용 방법, 용량, 복용 시간의 간격이 적힌 설명서와 의사의 처방전에 지시된 사항과 더불어 교육구가 학생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교육구가 법이 지정한 양식에 학생의 의사와 부모의 서면 요청서를 받았으면, 학생은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자동 주사가 가능한 에피네프린 (Epinephrine)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강장제(Anabolic Steroids)나 금지된 식이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 (EC §49030

et seq.): 면허가 있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근육 강장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금지된 물질과 금지된 약물 복용의 수단에 대한 미국의 지침(The United States guide to Prohibited Substances and Prohibited Methods of Doping)의 목록에 명시된 금지 식이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하지 않고서는 어떤 학생도 학교 간 대항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학생 신분의 운동선수나 그 선수의 부모/보호자 모두 이 금지 조항과 관련된 통보 양식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금연 캠퍼스 정책 (H&SC §104420): 교육구 이사회는 금연 캠퍼스 정책을 취하고 집행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가 소유하였거나 대여하고 있는 건물과 교육구의 부지와 교육구 모든 차량에서 담대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EC §§49471, 48980):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운동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부상당한 교육구 학생을 위한 의료 및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뇌진탕 및 머리 부상 (EC §49475): 교육법 §49475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선택한 교육구는 뇌진탕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활동 중에 머리 부상당한 운동선수를 남은 시간에서 즉시 제외하고 그 선수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의 검사를 받고 서면 허락서, 점진적인 활동 복귀 프로토콜 완료하거나 의료인의 7일 이상 의료인의 감독하에 관리받지 않고는 운동 활동에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해마다 뇌진탕과 머리 부상 정보지를 제공하고 처음 운동 연습과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운동선수와 그 학부모가 서명하고 제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 대표 운동부 운영을 위한 보험 공지(EC §32221.5): 학교 대항전 운동부를 운영하는 교육구는 운동팀 구성원에게 발송하는 보험 가입 제안서를 눈에 띠는 글자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인쇄한 다음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교 운동팀 전원이 의료 및 병원 비용을 커버하는 사고 부상 보험을 들어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 보험 의무는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의료 및 병원 비용을 커버하는 기타 건강 혜택으로 충족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 또는 저가 지역, 주 또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메디칼(Medi-Cal) 전화번호 (800)541-5555로 전화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이름이나 로고, 또는 두 개 다 있는 다른 편지들 또는 눈에 띠는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인쇄된 안내문에 포함해 보험 보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아편유사제(Opioid) 자료표(EC §49476):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교육구는 환자를 위한 아편유사제 자료표를 각 운동선수에게 매년 제공하고 운동선수와 그들의 학부모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편유사제에 대한 CIF 자료표는 별첨부록 #3를 참조하십요.

학생을 위한 의료 및 병원 서비스 (EC §§49471, 48980): 교육구 이사회는 교육구 부지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에 오고 가는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육구 학생에게 일어난 부상에 대하여 비영리 회원 재단을 통한 의료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료와 병원 서비스 비용을 되돌려 주거나 집합적, 총괄적, 혹은 개인적인 상해 보험의 규약을 통해서나 책임 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라도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러한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적 장애를 지닌 학생을 위한 수업 (EC §§48206.3, 48207.3, 48207.5, 48980):

만일 어떤 학생이 등록한 정규 학교 수업이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출석을 권장하지 못할 일시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구에서 개별적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별적 수업이란 학생의 집, 병원, 혹은 그 외 입주 보건 시설 등에서 수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립 병원이나 그 외 주법이 규정한 다른 환경 아래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복차로 돌아가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 자녀가 개별적 수업이 이미 시작된 학년도 중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다면, 학생은 이전에 받았던 개별적 수업에 출석하기 위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승인받을 것입니다. 귀 가정에서 받는 개별적 수업은 교육구에서 학생이 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때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를 지닌 학생 (EC §§48206.3, 48208, 48207.5, 48980): 귀 자녀가 교육구 관할 밖의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입주 보건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일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귀하는 그 병원이 위치한 교육구의 출석 학교 거주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귀하는 학생이 현재 있는 해당 병원을 거주지로 간주하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EC §49452.6): 제1형 당뇨병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할 의무 정보는 첨부 문서 #4를 참조하십시오.

제2형 당뇨병 (EC §49452.7): 7학년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정보와 안내는 첨부 문서 #5를 참조하십시오.

무료 및 할인 급식 (EC §§49510, et seq., 48980): 가정의 소득에 따라, 귀 자녀는 무료 및 할인 급식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AUHSD 무료 및 할인 급식](#)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사용에 대한 통보 (EC §§17612, 48980.3): 학교의 통합 해충 관리 계획안은 학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학년도 중에 귀 자녀의 학교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살충제 목록은 이 [AUHSD 교육구 통합 살충제 관리 계획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석면 관리 계획안 (40 CFR §763.93): 학교에 대해 개신된 교육구의 석면 관리 계획안은 각 학교 또는 교육구에 있는 유지 보수 및 운영부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501 N. Crescent Way, Anaheim, 92803 또는 전화번호 (714) 999-3581입니다.

합성 약물의 위험성 (EC §48985.5): 교육구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합성 약물(펜타닐 등)과 관련된 위험성과 위조 약물에서 이러한 위험한 합성 약물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여 매년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약물을 사고파는 통로로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성 약물과 위조 정제의 위험성과 이러한 약물을 매매하는 데 소셜 미디어가 사용될 위험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와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합성 약물의 사용과 남용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속적인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약물 과다 복용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과 모르핀과 같이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합성 오피오이드(아편유사제)로서, 실험실에서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극소량이라 할지도 치명적인 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타닐은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펜타닐은 무엇인가?

- 펜타닐은 색깔과 냄새가 없는 고효능 합성 아편유사제로서 급성 호흡 억제를 일으켜 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이것 처방 약도,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국에서 구하지 않은 모든 약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펜타닐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불법으로 제조된 펜타닐은 분말로 판매되거나, 흡수 종이에 떨어뜨리거나, 점안액과 비강 스프레이에 넣거나, 다른 처방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처럼 보이는 위조 알약으로 만듭니다. 무엇보다, 펜타닐은 헤로인, 코카인, 메타암페타민처럼 다른 약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오용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높이며 호흡과 체온이 상승하며 불안증과 피해망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 복용 시, 경련, 심혈과 쇠약, 뇌졸중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 약물의 경우, 약물 사용을 피하는 것이 과다 복용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직 면허를 소지한 공인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약물만이 안전합니다.

출석

법정 학교 출석 옵션 (EC §§35160.5, 46600, 48204, 48980): 교육구는 학교 출석에 대한 기준의 모든 법적 선택권들과 교육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 학교 출석의 조항에 대하여 모든 부모/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석 학교로 지정된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교육구 내에서의 전학, 다른 교육구로의 전학, 부모의 직장을 근거로 한 전학, 관리 이사회에서 결의안에 정해졌다면 “선택 교육구(district of choice)” 전학 등이 있습니다. 귀하는 교육구 교차 전학 승인 정보와 규정은 [AUHSD 이사회 규정 8536 교육구 교차 전학\(Transfers-Interdistrict\)](#)와 [이사회 규정 8535.5R 교육구 내 전학\(Transfers-Intradistrict\)](#)을 참조하십시오. 출석 옵션 요약 전문 열람은 별첨부록 #6을 참조하십시오.

정당한 사유의 결석 (EC §§48205, 48980): 학생의 결석이 치료나 타당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학교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학생은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기간 동안의 모든 과제와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법 섹션 48205의 전문 열람은 별첨부록 #7을 참조하십시오.

성적 삽감/학점 손실 (EC §§48205, 48980): 어떤 결석이나 교육법 섹션 48205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의 결석이라면, 결석 기간 동안 빠진 과제물과 시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주어진 과제들과 시험들을 적절하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만족스럽게 완료하여 제출하였을 때는 학생의 성적이 삽감되거나 학점이 손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섹션 48205의 전문 열람은 별첨부록 #7을 참조하십시오.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한 결석 (EC §§46014, 48980): 만약 귀 교육구의 관리이사회가 EC § 46014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다면,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생은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나 혹은 학생의 예배의 장소나 그 외 적당한 장소, 혹은 학교를 떠나 종교적 그룹에 의해 설계된 장소에서 [목차로 돌아가기](#)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 결석하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한 달에 4일 이상 이 사유로 결석할 수 없습니다

비밀 보안(Confidential)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결석 (EC §46010.1): 7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비밀 보안 의료 서비스(부모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됨)를 받기 위해 정당한 결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 (EC §§ 222.5, 46015, 48205, 48980): 교육구는 학생의 임신, 출산, 가임시, 임신 종료 도는 회복을 근거하여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학생을 제외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를 기타 임시 장애 상태와 같은 방법과 정책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은 8주간의 양육 휴가 또는 학생의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추가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결석 기간에, 결석은 양해 받아야 하며, 학생이 학업을 완료하거나 기타 학교의 요건을 끝마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 휴가에서 복귀하고 난 후, 학생은 이전에 등록했던 학업 과정을 재개하며 빠진 학업을 보충하고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5학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양육 휴가 이전에 등록했던 학교로 복귀하는 대신에 대안 교육 옵션에 출석할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유 학생에게 학교 캠퍼스에서 모유를 짜고, 영아에게 수요하거나 모유 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다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는 수유 학생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은 이러한 편의 제공을 이용한 것에 대해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축 수업일 시간표와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교직원 개발의 날(EC § 48980): 교육구는 단축 수업 일과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교직원 개발의 날에 대하여 모든 부모/보호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 공지는 교육구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만일 이 공지가 배부된 이후에 새롭게 일정이 잡힌 단축 수업 일이나 교직원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교육구는 새로운 단축 수업 일과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일정을 한 달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차별 금지에 대한 성명서(1964년 공민법의 타이틀 VI, 1972년 교육 수정안의 타이틀 IX, 1973년 재활법 §504):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 그룹 정체, 종교, 성/성별(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귀 자녀는 무상으로 공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별첨부록 #9에서 이민과 관련된 “당신의 교육 권리(Know Your Education Rights)” 열람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해 마련된 이민 학생과 가족을 위한 추가 자원은 <http://oag.ca.gov/immigrant/rights>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영어의 부족함이 교육구의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참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은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인적자원부 통합 민원/고발 절차 준수 담당관(학생) Lorena Stout 앞으로 보내십시오. 주소는 501 N. Crescent Way, Anaheim CA 98201, 전화번호 (714)999-5621입니다. 교육구의 차별 금지 성명서는 [여기](#), 그리고 이 핸드북 19페이지 있습니다. 교육구의 이사회 규정 8900(5145.2) 차별금지/괴롭힘 링크와 별첨부록 #10을 참조하십시오.

성적 괴롭힘에 대한 규정 (EC §§231.5, 48980; 5 CCR §4917): 교육구의 서면 성적인 괴롭힘 규정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이 통보에 대한 별첨부록 #11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504 프로그램: 1973년 재활법의 섹션 504: 교육구는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약속합니다. 1973년에 제정된 연방 재활법 섹션 504과 미국 장애법 (42 USC 1201 et seq.)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섹션 504는 교육구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삶의 중요한 활동(보기, 듣기, 걷기, 숨쉬기, 일하기, 수동 작업, 학습, 섭식, 수면, 서기, 들키, 굽히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및 말하기 포함)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은 비장애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 동등하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그 학생이 개인적인 필요에 최대한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1974년 공민권법의 타이틀 VI, 1972년 개정 교육법의 타이틀 IX,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그리고 장애인법(IDEA, 이전 EHA)을 포함한 법 아래서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미국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본부는 이러한 법과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을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EC §260, et seq.)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민원을 접수하기 원하시면, 교육구의 섹션 504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또는 다른 적법한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섹션 504 아래서 학생 파악과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별첨부록 #12를 참조하십시오.

장애를 지닌 학생들

특수 교육(EC §56000 et seq., 20 USC §1401 et seq.):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법은 제약이 최소한인 환경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지닌 학생의 정보, 절차적 보호와 관련된 안내와 그리고 추가 자료와 사안은 [\(714\) 999-3526](#)로 전화해 특수 청소년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찾기(CHILD FIND:EC §§56300, 56301):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파악하고, 찾고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믿는다면, 귀하는 교육구 [특수 청소년 서비스 \(714\) 999-3526](#)에 연락해 검사 의뢰를 청탁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Miscellaneous)

종합적인 성교육 및 HIV/AIDS 예방 교육(EC §§51938, 48980): 캘리포니아 주법, 캘리포니아 건강 청소년 법은 종합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을 7학년부터 중학교에서 최소 1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최소 1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생이 인간의 성별에 대하여 부모, 보호자 또는 믿을 만한 성인과 이야기할 것을 장려합니다. 수업은 의학적으로 정확하며, 나이에 맞아야 하며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적어도 14일 전에 동의서 서한(별첨부록 #15)을 모든 부모/보호자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교과정의 일부를 가르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별도의 편지를 집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지에는 수업 날짜, 기관 명, 그리고 학생이 이 수업을 받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부모/보호자에게 있음을 알리는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질문이나 책자와 시청각 수업 자료를 검사하기를 원하시면, 교사나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https://www.cde.ca.gov/ls/he/se/>에서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1930~51939)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법은 부모가 자녀를 이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허락합니다. 만약 귀 자녀가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을 받기 원치 않는다면, 교육분과의 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요청을 학기 초나 종학 성 건강 단원 수업이 시작하기 최소 2주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건강 행동 및 위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익명성, 자발성, 기밀성이 보장된 연구 및 시험, 질문지, 설문조사를 포함한 평가 도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성 관련 태도나 행위에 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질문지, 또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부모/보호자는 이를 검토한 후 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Dual Enrollment)과 국제학력 인증(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EC § 48980.6): 교육구의 이중등록 및 국제학력인증(케네디 고등학교) 제공에 대한 정보 링크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해부, 혹은 동물에게 해를 주거나 훼손하는 행위(EC §32255 et seq.): 만일 귀 자녀가 동물을 해부하거나 동물들에게 해를 주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은 이 반대 의견에 관하여 교사에게 통보하고 동물을 해롭게 혹은 훼손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계된 교육적 프로젝트에 부모/보호자가 입증하는 노트를 제출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ASPP 주 시험(60615; 5 CCR 852): 봄 학기에 3학년에서 8학년, 그리고 11학년 학생은 매년 시행하는 주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CAASPP의 일부 혹은 시험 전체에 대한 서면 면제 요청을 해마다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 과목 선이수(AP) 과목 시험(EC §§52244, 48980): 교육구는 경제적 빈곤층 학생에게 부과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학 과목 선이수 시험 응시료 부담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조건들: 직업 기술 교육(EC §§51225.3, 51229, 48980):

- 대학 입학 조건들: 캘리포니아의 대학교(UC)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SU)는 대학 입학을 위한 공통적인 고등학교 교과목들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 교과목들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한 학생은 입학 신청을 할 자격이 있으며 입학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편적인 “A-G” 필수 조건 목록입니다.
 - (1) 역사/사회과목 2 년(two years of history/social science);
 - (2) 대학 예비 영어, 혹은 언어 수업 4 년(four years of college preparatory English or language instruction);
 - (3) 대학 예비 수학 3 년(three years of college preparatory mathematics);
 - (4) 대학 예비 실험 과학 과목 2 년(two years of laboratory science);
 - (5)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2 년(two years of the same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6) 시각 공연 예술 1 년(one year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그리고
- (7) 대학 예비 선택 과목 1 년(one year of college preparatory electives)

- **참고 웹사이트:** 다음은 학생들과 가족이 대학 입학 조건과 대학 입학에 보증된 고등학교 교과목들의 목록을 알아보는 것을 돕기 위한 UC와 CSU의 웹사이트입니다.

UC: <https://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admission-requirements/freshman-requirements>

CSU: www.csumentor.edu/planning/high_school/subjects.asp

- CaliforniaColleges.edu: 이 플랫폼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대학, 진로, 학자금 지원 옵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 계정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을 조사하고, A-G 과목 이수 현황을 추적하며, 대학 입학 계획을 세우고, 사전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FAFSA 또는 CADA와 같은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커리어 진로 조사, 학업 목표 설정, 미래 계획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와의 연결 도구도 제공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CaliforniaColleges.edu를 활용하여 대학과 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의 공식 대학 및 진로 계획 플랫폼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과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 학부모, 교육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직업 기술 교육:**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서는 “직업 기술 교육”을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과 직업의 진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핵심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직업적인 지식을 통합한 다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적 프로그램들과 함께 직업 기술 교육은 농업기술 교육, 가정 기술 교육,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교육, 그리고 지역의 직업 센터들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Cal State와 UC 시스템 진학을 위한 교과목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술 교육 과목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직업 기술 교육의 웹사이트:**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cde.ca.gov/ci/ct/
- **지도 카운슬링:** 학생은 대학 입학 조건에 맞는 과목의 선택과 직업 기술 교육 과목, 혹은 둘 다에 등록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카운슬러와 면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와 면담을 위해 자녀의 카운슬러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캘그랜트 프로그램 (교육법 § 69432.9): 교육구는 모든 11학년 학생이 캘그랜트 지원자로 간주되며, 학생이 거부(opt out)하지 않는 한 해당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11학년 학생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 평균(GPA)은 캘리포니아 주의 캘그랜트 시스템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됩니다. 만약 캘그랜트 심사를 위해 GPA 정보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11학년이 시작된 후 9월 15일 이전까지 반드시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해당 안내는 11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지역 견습 및 예비 견습 프로그램 (교육법 §§ 48980, 48980.5 & 49600): 교육구는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견습기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관리하는 등록된 프로그램 후원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견습(apprenticeship) 및 예비 견습(pre-apprenticeship)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교육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나 안내 책자, 브로셔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는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주소에서도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atabases/das/aigstart.asp> [해당 안내는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학교 책무 성적표 (EC §§35256, 32286): 교육구 관리 이사회는 교육구의 각 학교의 학교 책무 성적표 (SARC: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를 매해 발간합니다. SARC의 사본은 각 학교의 교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기](#)를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SARC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 섹션 33126에 명시된 학교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SARC는 매년 학교의 핵심 요소의 설명이 포함된 안전 계획안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 프로그램 (EC § 310):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언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정보와 각 프로그램의 설명서를 첨부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설명은 별첨부록 #13을 참조하십시오.

보건학 수업/종교적 훈육과 신념의 갈등 (EC §51240): 만일 학교의 보건학 수업의 어떤 부분이 학부모의 종교적 훈육이나 신념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면, 학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훈육과 신념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의 수업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안 학교에 대한 공지 (EC §58501): 법은 교육구가 부모/보호자들에게 대안 학교에 대한 통보를 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육법 섹션 58501에 명시된 통보의 사본은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직업 상담과 과목 선정에 있어서의 성 평등 (EC §221.5): 귀하는 7학년부터 직업 상담과 과목 선정 결정과 관련된 상담 시간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 민원/고발 처리 절차(5 CCR §4622): 교육구는 불법적 차별이라는 주장을 포함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연방법, 주법,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고소의 접수, 조사, 그리고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교육구의 통일된 고소 처리 절차 규정은 교육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고소 처리 절차의 사본은 받으시려면 [여기클릭](#)하십시오.

모든 학생 성공법(ESSA, 20 USC §6301et seq., EC §§313.2, 440):

- 영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LEP): ESSA는 교육구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거나 받고 있는 영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한(LEP) 아동의 학부모 혹은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학생이 왜 LEP로 파악되었으며 언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 배정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이유,

(2) 학생의 영어 능숙도 수준, 어떻게 그 수준을 평가한 방법 및 학생의 학업 성취 상태,

[목차로 돌아가기](#)

- (3) 학생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수업 방법 및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수업 방식,
- (4) 학생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생의 장점과 취약점을 충족하게 될 것인가,
- (5)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생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며 학년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나이에 적절한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할 것인가,
- (6) 이 프로그램을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 (7) 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인가 그리고,
- (8)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즉시 끌 수 있는 권리,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교육구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 방식 중에서 학부모의 선택을 돋는 것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면 세부 안내를 포함한 학부모 권리와 관련된 정보.

만약 귀 자녀가 LEP이며 언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었거나 참가하고 있다면 귀 자녀에 해당하는 위 정보에 대하여 알기 위해 교육분과로 연락하십시오.

- 교사와 보조 교사의 전문성 자질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 ESSA는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자녀의 학급 교사의 전문성 자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권리 허락하고 있습니다.

- (1) 교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수업의 학년 수준과 과목 영역에 대한 주의 자격과 면허 기준 충족 여부,
- (2) 교사가 비상 또는 기타 일시적 상황에서 주의 자격과 면허 기준에 대한 면제를 받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 (3) 교사의 학위와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다른 졸업 수료 또는 학위 및 수료 혹은 학위 전공 분야 그리고
- (4) 자녀가 준전문가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자격

귀 자녀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에게 4주 이상 연속으로 그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구는 시기적절하게 통보할 것입니다. 이 4주간 통지 서한의 양식은 [이 링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 교육구는 각 주 학업 평가 시험에 대한 귀 자녀의 성취 수준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 홈리스 리에종: 흠티스 학생은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법 아래 특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와 관련된 정보에 관련된 사안을 위해 교육구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 담당자, [\(714\) 999-7734](#)로 전화하여 Adela Cruz 박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모병관에 대한 학생 정보 공개: 학생 기록 하에 있는 기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총기 안전 각서

수신인: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발신인: Mr. Michael Matsuda

제목: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이 각서의 목적은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의 모든 학생의 부모와 법정 보호자께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손이 닿지 않도록 총기를 보관할 책임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아동들이 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은 자기 집에서 총기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탄약과 분리해서 잠가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방법으로 총기를 보관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법적 책임 이해를 돋기 위해, 이 각서는 총기 보관에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 각서를 검토하고 귀하와 귀 가족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실천을 평가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는,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와 통제 하에 있는 총기를 아동이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허락 없이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곳 이내에 장전 또는 비장전 상태로 총기를 보관하고, 또한 아동이 그 총기에 접근함으로써 (1) 아동 자신 및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2) 아동이 그 총기를 경계 밖이나 유치원 또는 유치원에서 12학년이 있는 학교나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 활동 및 공연에 가지고 가는 경우, 또는 (3) 불법적으로 그 총기를 타인에게 휘두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합니다.
- **비고:** 그 아동이 그 총기에 접근한 결과로 인해 누군가가 죽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 그 형벌은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아동이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허락 없이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곳 이내에, 심지어 미성년자가 실제로 절대 그 총기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¹, 총기를 장전 또는 비장전 상태로 부주의하게 보관하거나 내버려 두는 경우, 아동의 총기 접근으로부터 안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²

¹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25100에서 25125, 그리고 25200에서 25220 참조

²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25100(c) 참조

- 잠재적 벌금과 징역에 더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법 아래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총기 주인은 10년 동안 총기를 지참, 통제, 소유,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³
- 마지막으로, 부모나 보호자는 그 사람의 자녀나 피후견인이 총기를 발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⁴

비고: 귀하의 카운티나 시는 총기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법부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oag.ca.gov/firearms/tips>.

귀 자녀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준수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총기를 잠금 용기나 총기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Mr. Michael Matsuda
교육감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국

³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29805 참조

⁴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714.3 참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대한 모델 공지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은 18세 이상 학생(“유자격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의 기록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이러한 권리는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이후 학교에 출석하게 될 때 유자격 학생에게로 이전됩니다.

학부모 또는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학생(이후, 유자격 학생)은 조사하기를 원하는 기록이 무엇인가를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학교장(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접근 일정을 잡고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에게 요청한 기록을 조사할 시간과 장소를 통보할 것입니다.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사유가 아니라면, 학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는 사본을 만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수정을 학교에 요청할 권리

학교에 기록의 수정을 요청하는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은 자신이 수정을 원하는 부분과 수정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장[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가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요청한대로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는 그 결정을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에게 통보하고 그들이 심의(hearing)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통보할 때,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심의 후, 만약 학교가 여전히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학부모와 유자격 학생은 이의를 제기한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시한 기록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으로부터 반드시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FERPA가 학교가 동의 없이 그들의 기록을 공개하도록 허락한 대상이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과 합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교직원;
- 학생이 전학해 가는 다른 학교;
- 감사나 평가 목적을 가진 특정 직원;
-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과 연결된 해당 기관;
- 학교를 위해 또는 대신해서 특정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
- 인증/인가 기관;
- 사법 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급된 소환장 준수를 위해;
- 의료 및 안전 비상사태의 경우 해당 직원; 그리고
- 청소년 사법 제도 내에서 특정한 주법에 따른 주와 지역 당국

만일 교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면, 그 교직원은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청에 의해, 학교는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또는 이미 등록한 다른 교육구 직원에게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의 목적을 위해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요 공부 분야, 공식적으로 알려진 활동들이나 참여하는 스포츠, 운동부 선수들의 몸무게와 키, 출석한 날짜들, 받은 학위들이나 상장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학생이 출석한 공립, 혹은 사립 학교와 같은 “디렉터리”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디렉터리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와 유자격 학생에게 통보하고 학부모와 유자격 학생이 학교가 그들에 대한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적당한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와 유자격 학생에게 FERPA에 있는 그들의 권리를 매년 공지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공지 방법은 각 학교의 재량입니다.

- 학교가 FERP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권리 FERPA 행정 사무실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미국 질병관리 및 예방 센터(CDC) 아편유사제(Opioid) 자료표



처방 아편유사제는 보통에서 중증의 통증 완화를 돋는데 하용할 수 있으며 종종 수술, 부상 또는 특정 질병 상태에 따라 처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치료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편유사제 사용의 위험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처방 아편유사제는 중독의 심각한 위험과 특별히 장기 사용하는 경우 과다복용의 위험을 수합니다. 종종 호흡이 느려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은 돌연사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처방 아편유사제 사용은 처방 지시대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몇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내성- 같은 수준의 통증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양의 약을 먹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의존성 - 약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증 민감성 증가
- 변비
- 메스꺼움, 구토, 입안 건조
- 졸림과 어지럼증
- 혼란스러움
- 우울증
- 낮은 수치의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성욕, 에너지 및 힘의 저하
- 가려움증과 식은땀

최대
4명 중
1명



1차 치료에서
아편유사제 장기
처방을 받은 사람
4명 중 1명이
중독으로 고생합니다.

* 한 연구에서 발견

다음의 경우 위험을 더 커집니다:

- 약 남용, 약물 사용 장애 또는 과다복용 이력
- 정신 건강 질병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 수면성 무호흡증
- 노령 (65세 이상)
- 임신

처방 아편유사제를 복용하는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치의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다음의 약을 피하십시오:

- 벤조디아제핀 (Xanax 또는 Valium 등)
- 근이완제 (Soma 또는 Flexeril 등)
- 최면제 (Ambien 또는 Lunesta 등)
- 다른 처방 아편유사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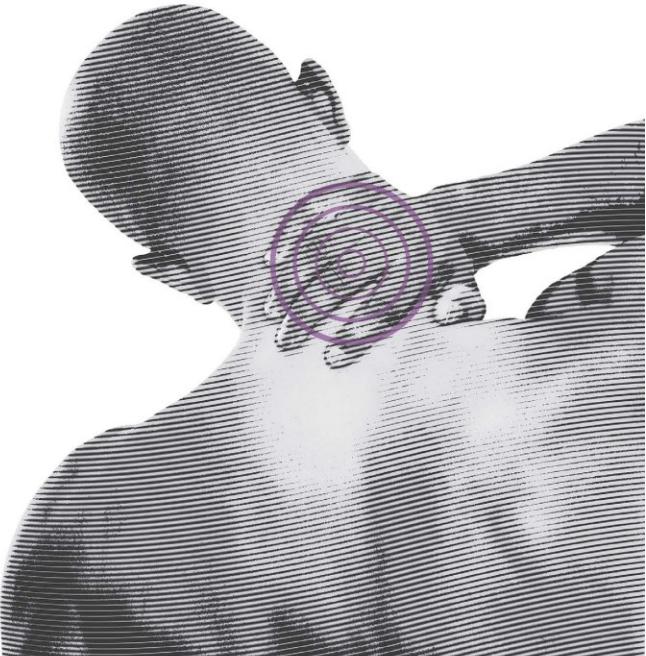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CS264107C May 9,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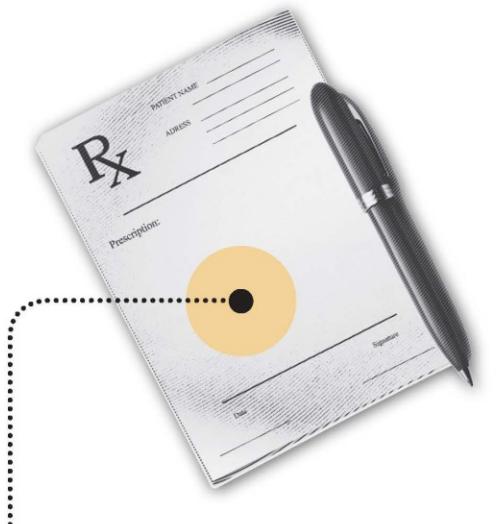
옵션 알아보기

처방 아편유사제가 포함되지 않고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주치의와 의논하십시오. 이 옵션 중 일부는 실제로 더 효과가 있으며 위험과 부작용도 적습니다. 이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및 나프록센과 같은 진통제
- ▣ 우울증이나 간질에 사용되는 몇 가지 약
- ▣ 물리치료와 운동
- ▣ 환자가 통증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신체적, 행동적 및 정서적 원인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인지 행동 요법, 심리학, 목표 지향적 접근



통증을 위해 아편유사제를 처방받았다면,



숙지하십시오!

귀하의 약 이름, 복용량과 복용 방법 및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 ▣ 절대로 처방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 _____ 내에 주치의와 경과에 대하여 의논하십시오.
 - 함께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 처방 아편유사제 없이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십시오.
 - 모든 염려나 부작용에 대하여 의논하십시오.
- ▣ 오용과 남용 예방 협조
 - 절대 처방 아편유사제를 팔거나 나눠주지 마십시오.
 - 절대 다른 사람의 처방 아편유사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처방 아편유사제를 보관하십시오. (여기에는 방문자, 어린이, 친구 및 가족이 포함됩니다.)
- ▣ 사용하지 않은 처방 아편유사제의 안전한 처리: 지역 약국의 회수 프로그램, 약국의 우편 회수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변기에 물로 흘려보내십시오. 미국 식품의약 관리국의 지침에 따릅시오. (www.fda.gov/Drugs/ResourcesForYou)
- ▣ www.cdc.gov/drugoverdose에서 아편유사제 남용과 과다복용의 위험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 ▣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에게 지침을 문의하거나 SAMHSA의 내셔널 도움 전화 1-800-662-HELP로 전화하십시오.

제1형 당뇨병에 관한 안내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452.6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 교육 기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제1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아 제1형 당뇨병은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한 자가 면역 질환이며 이 정보지에 제공된 지침은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제1형 당뇨병 보통 아동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하기는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 따르면, 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은 전국적으로 2018년 18만 7천 명에서 2019년에 24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만 명의 청소년 중 25명에서 만 명 중 35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13~14세이지만, 진단은 인생에서 훨씬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 기능으로, 우리 몸은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체세포의 기본 연료인 포도당(혈당)으로 변환시킵니다.

췌장에서는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제1형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 몸의 췌장이 인슐린 생산을 멈추게 되고 결국 혈당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혈당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병케톤산증(이후 DKA)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아래에 명시된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의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학생은 주치의로부터 이 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

연구자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제1형 당뇨병이 발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대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1형 당뇨병 발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적 촉매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도 제1형 당뇨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식단 또는 생활 습관 선택에 의해 야기되지 않습니다.

제1형 당뇨병 및 당뇨병 케톤산증과 관련된 경고의 증상과 징후

아동의 제1형 당뇨병 경고의 증상과 징후는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으며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경고의 징후를 보이면, 귀 자녀의 주치의나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연락해 귀 자녀가 제1형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의논하십시오.

목마름 증가
대소변 훈련 후 야뇨증을 포함한 다뇨증
공복감이 증가하고, 심지어 식후에도 공복감을 느낌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시야가 흐릿해짐
피부가 매우 건조해짐
염증이나 베인 상처의 회복이 더디
침울함, 불안, 짜증 또는 행동 변화

DKA는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음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DKA는 응급 의료 상황입니다.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과일 향이 나는 호흡
건조/홍조를 띤 피부
메스꺼움
구토
복통
호흡곤란
흔란스러움

이용 가능한 당뇨 검사

혈당 색소(A1C)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2~3달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측정합니다. 두 번의 개별적인 검사에서 A1C 수치가 6.5 퍼센트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임의(비 공복) 혈당 검사: 금식하지 않았을 때 무작위 시간에 혈액 표본을 채취합니다. 임의 혈당치가 200mg/dL을 초과하면 당뇨병입니다.

공복 혈당 검사: 밤새 금식하고 아침 공복에 혈액 표본을 채취합니다. 검사를 2회 실시하여 혈당치가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아침 공복 혈당치를 측정한 후, 설탕물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2시간 후에 검사한 결과가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제1형 당뇨병 치료

제1형 당뇨병을 예방할 방법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일단 제1형 당뇨병이 발병하면 약을 먹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 귀 자녀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주치의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주치의는 내분비계 및 당뇨병 같은 관련 질병 전문 의사인 내분비 전문의에게 자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양호 교사나 학교 행정 관리자 또는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참조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아동건강

마요 클리닉

국립 의학 도서관과 국립 보건원의 메드라인

문의: 학교 기반 건강 프로그램 사무실 | schoolnurse@cde.ca.gov

마지막 검토: 2024년 3월 4일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안내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49452.7절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지역 교육 기관들은 7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미국 당뇨병 협회, 캘리포니아 학교 간호사 기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과 공조하여 이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번역본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제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당뇨병의 유형입니다.

- 몇 년 전까지 제2형 당뇨병은 어린이에게는 드문 질병이었으나 이제는 보편적인 질병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과체중인 십 대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의 어린이 3명 중 1명은 살면서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우리 몸이 당분(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우리 몸은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체세포의 기본 연료인 포도당으로 변환시킵니다.
- 췌장에서는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 제2형 당뇨병에 걸리면 체세포가 인슐린 효과에 저항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 시간이 지나 혈당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것이 고혈당입니다.
- 고혈당증은 심장병, 실명,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나 경고 신호를 보이거나 경험한 학생은 당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합니다.

위험 요인

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인자는 소아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 과체중:** 소아 제2형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비만입니다. 미국의 경우, 5명의 어린이 중 거의 1명이 비만입니다. 비만 아동인 경우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 당뇨병 가족 병력:**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당수는 적어도 한쪽 부모가 당뇨병 환자이거나 심각한 가족 병력이 있습니다.
- 무활동:** 활동량이 적으면 인슐린에 대한 신체 반응 능력이 감소합니다.
- 특정 인종/민족 그룹:**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라틴계, 또는 아시안/태평양 섬 원주민 다른 민족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춘기:** 사춘기에 있는 젊은이는 빠른 성장과 신체적 발달을 겪는 사춘기에 인슐린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보다 어린 연령대의 어린이보다 제2형 당뇨병에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적신호와 증상

소아 제2형 당뇨병의 적신호와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며,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 모두가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나 적신호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혹은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제2형 당뇨병에 걸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공복감이 증가하고, 심지어 식후에도 공복감을 느낌
-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 심해진 갈증, 입 마름, 다뇨증
- 극심한 피로감
- 시야가 흐릿해짐
- 염증이나 베인 상처의 회복이 더디
- 목덜미 또는 팔 아래쪽 피부에 짙은 색의 부드럽거나 부풀어 오른 부분이 생성됨
-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중단 그리고/또는 여아의 경우 얼굴과 몸에 과도하게 털이 자람
- 고혈압 또는 비정상적인 혈액 지방 수치

제2형 당뇨병의 예방법과 치료법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양의 건강한 음식 섭취와 정기적인 운동은 어린이가 정상 체중 유지 및 정상 혈당치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현명한 음식 선택 저지방과 저열량 음식 섭취하십시오.
- **더 많은 신체활동:** 신체활동을 매일 최소 60분 이상 늘리십시오.
- **약 복용:** 음식 조절과 운동이 병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약을 복용함으로써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동의 나이, 체중, 그리고 신장을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아동이 당뇨에 걸렸는지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혈당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당뇨 검사

- **혈당 색소(A1C)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2~3달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측정합니다. 두 번의 개별적인 검사에서 A1C 수치가 6.5 퍼센트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 **임의(비 공복) 혈당 검사:** 마지막 식사 시간에 관계없이 혈액 표본을 채취합니다. 임의 혈당치가 200mg/dL을 초과하면 당뇨병입니다. 공복 혈당 검사를 통해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복 혈당 검사:** 밤새 금식하고 아침 공복에 혈액 표본을 채취합니다. 공복 혈당치는 100mg/dL 이하가 정상입니다. 혈당치가 100~125mg/dL이면 당뇨병 전 단계로 간주합니다. 검사를 2회 실시하여 혈당치가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아침 공복 혈당치를 측정한 후, 설탕물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2시간 후에 검사한 결과가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소아 제2형 당뇨병은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정보문의 내용은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양호 교사나 학교 행정 관리자 또는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정 학교 출석 옵션

한국어 번역본은 2025년 6월 2일에 게시될 것입니다.

교육법 제48205절. 사유가 인정되는 결석; 평균 하루 출석 산출

한국어 번역본은 2025년 6월 2일에 게시될 것입니다.

결혼/임신/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권리와 옵션

관리이사회는 결혼, 임신과 관련된 책임과 자녀 양육과 그에 관련된 책임은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학생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결혼, 임신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을 지속하고 탄탄한 교육과 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자녀의 건강한 발육을 증진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교육구는 오직 학생의 임신, 출산, 상상 임신, 임신 종료 또는 회복과 관련된 사유만 가지고 그 어떤 학생이라도 그 어떤 수업 또는 특별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이 실제 또는 부모가 될 가능성, 가족 또는 결혼 상태에 관해 성별에 따라 학생을 드라게 대우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교육법 221.51, 230; 5 CCR 4950; 34 CFR 106.40)

교육감이나 지정 대리인은 학년도가 시작할 때, 법 아래서 임신했거나 육아 중인 학생의 권리와 옵션에 대하여 매년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에게 연례 학교 환영 패킷과 독립학습 패킷을 통해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와 옵션을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법 222.5, 48980)

학교와 관련 목적에 대하여, 유효한 결혼을 시작한 18세 미만 학생은 결혼이 끝이 났다 하더라도 18세 학생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습니다. (가족법 7002) 교육구는 사전 입학 조회로 입학 지원자가 "Miss" 또는 "Mrs." 인지를 묻는 등 입학 지원서에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구는 사전 입학 조사로 입학을 위해 지원자의 성별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회는 남녀 지원자에 대해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조회 결과가 타이틀 IX에 의해 금지된 차별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교육구 지원 서비스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학급 설정은 학생 및 학생의 자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실 환경이 선호되는 교실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업 또는 특별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들에게 따로 제공되는 모든 대안 교육 프로그램, 활동 또는 과정은 다른 교육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교육법 221.51; 5 CCR 4950)

만약 기타 일시적인 장애 조건이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지명 대리인은 학생이 임신, 출산, 상상 임신, 임신 종료 및 회복 관련해 의사나 임상 간호사로부터 그 학생이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인증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221.51; 5 CCR 4950; 34 CFR 106.40)

가능한 한 최대로, 교육구는 직접 또는 지역사회 기관들과 공조하여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과 그 자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적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으며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등교일과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 중에 학생이 양육하는 아동을 위해 학교에 또는 학교에 가까운 곳에 턱아 및 발육 서비스
2. 양육 교육과 생활 기술 수업
3. 교육법 49554, 42 USC 1786, 그리고 7 CFR 246.1-246.28에 따라 임신한 학생과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특별 학교 영양 보충제
4. 산전 건강 관리를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5. 담배, 술 및 마약 예방 및 중재 서비스
6. 학업 및 개인 상담
7. 학생이 학년 수준의 교육 기준을 달성하고 졸업을 향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돋는 보충 수업

적합한 대로, 교사, 행정 관리자, 및 임신 그리고 육아 중인 학생과 함께 일하는 기타 직원들은 이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은 진료 예약 및 기타 BP/AR 5113 - 결석과 사유에 명시된 목적에 의한 결석은 양해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양육권을 가진 아픈 아동을 돌보기 위한 결석도 양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을 양해받기 위해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를 위한 장기 결석(육아 휴직)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학생과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이 영어를 돌보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육아 결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무 여름 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학생이 학년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영아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지명 대리인은 학생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8주간 이상의 육아 결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46015; 34 CFR 106.40)

학생이 18세 이상이면 학생에게,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육아 결석을 하겠다는 목적을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도 육아 결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법 46015)

학생이 육아 결석을 받는 경우, 출석 감독은 학생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면제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육아 결석 기간에 학업 과제나 기타 학교 요건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법 46015)

육아 결석 이후,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고 학생이 육아 휴직을 받기 전에 등록했던 교과목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대안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복귀할 때,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에게 육아 결석 중에 놓친 학업을 보강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학업 보충을 위한 계획 및 교과목 재등록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법 46015)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지명 대리인이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까지 교육구의 모든 졸업 조건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은 5학년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교육법 46015)

편의 제공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한 학생은 임시적 장애를 지녔거나 질병이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106.40)

학교는 수유하는 학생이 모유를 짜거나 유아에게 모유를 먹이거나 모유 수유 관련된 다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편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학업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면 이러한 이유로 빠진 과제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리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법 222)

1. 모유를 짜거나 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닌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이용
2. 학교 캠퍼스에 모유 펌프기 및 모유를 짜기 위해 필요한 용품을 지참하는 것을 허락
3. 모유 펌프기나 모유를 짜기 위해 필요한 용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
4. 짠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 이용
5. 학생이 모유를 짜거나 유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불만 및 민원 제기

학교는 수유하는 임신, 결혼, 또는 부모 상태에 근거한 차별, 교육법 46015의 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위반, 또는 모유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교육구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5 CCR 4600~4670과 BP/AR 공통 민원 절차에 따라 교육구의 공통 불만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민원인을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나 CDE가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법 222, 46015; 5 CCR 4600~4670)

프로그램 평가

교육감이나 지명 대리인은 결혼하였거나, 임신했거나, 그리고 육아 중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구 전략의 효과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학생 참여, 학업 성취, 학교 출석, 졸업률에 관한 데이터 및 교육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교육적 권리

▪ 귀 자녀는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이민 상태 및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 모든 아동은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6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하고 보안이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은 차별, 괴롭힘, 따돌림, 폭력 그리고 협박이 없는 환경의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이민 상태 및 기타의 특징에 근거하여 차별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킬 때, 학교는 반드시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나이 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류를 용납해야 합니다.
-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학부모는 시민권/이민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연방과 주법은 학생의 교육 기록과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은 정보 공개가 교육적 목적이거나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정 명령이나 소환장에 대한 응답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 일부 학교는 학생의 기본적인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합니다. 만약 학교가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한다면, 귀 자녀의 교육구는 반드시 부모/보호자에게 학교의 디렉터리 정보 규정에 대한 서명 공지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디렉터리에서 자녀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옵션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구금 또는 추방될 경우를 대비한 가족 안전 계획

- 부모가 구금 또는 추방되는 상황에서 누가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성인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두 번째 연락처를 포함한 자녀의 비상 연락처 정보를 학교에 업데이트 하십시오.
- 부모는 양육자 승인 신청서나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맡기기 위해, 귀하는 **보호자 위임 진술서**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임시 후견인 선임 청원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Temporary Guardian of the Person)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성인이 자녀의 교육 및 의료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불평/민원/이의 제기 접수 권리

- 귀 자녀가 실제 혹은 인지된 국적, 민족성 또는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차별, 괴롭힘, 협박 혹은 따돌림을 당했다면 교육구에 중오 범죄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AUHSD 이사회 규정 8900 (5145.3) 차별금지/괴롭힘 금지

한국어 번역본은 2025년 6월 2일에 게시될 것입니다.

AUHSD 이사회 규정 8708 성적 고롭힘, 학생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는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습 환경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불법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과 주법에 따라,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에는 성폭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구는 성적 괴롭힘을 신고, 증언, 민원을 접수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성적 괴롭힘 주장과 관련한 교육구 민원, 조사, 또는 고충 처리에 관련된 사람을 향한 보복 행위와 행동을 금지합니다.

금지된 성적 괴롭힘에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접근,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 또는 교육 환경에서 성별이 동성 또는 이성과 관계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성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이 학생의 학업 상태나 진행에 대한 노골적 또는 암시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
2. 해당 행위에 대한 학생의 복종이나 거부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3. 해당 행위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1972년 교육 개정안 타이틀 IX에 따라, 성적인 성질의 원치 않는 행위가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혜택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4. 해당 행위를 학생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혜택, 서비스, 명예, 프로그램 또는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또는 그것들을 통해 제공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 밖, 또는 학교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영향이 피해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만큼 심각하며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관련된 활동에서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Bullying)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대리인, 또는 교장/대리인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고 학교나 학교에서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제거 조치하여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민원”은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는 혐의 행동이나 위법 행위를 교육구 직원 또는 학교 행정 책임자와 말 또는 글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또는 “민원”에는 구두 보고, 이메일, 문자 또는 교육구 직원이나 학교 행정 책임자에게 기타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민원”은 특정한 양식에 작성해야 한다거나 위반한 법을 특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환경”에는 학교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참여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학교 시설, 학교 버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학교와 교육구가 후원하는 교실이나 트레이닝 프로그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의 모든 학업, 교육, 특별 과외 활동, 운동 또는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이 포함됩니다.

“제3자”에는 교육적 사업 또는 특별 과외 활동 목적을 위해 학교 및 교육구와 연결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제3에는 공급업체, 자원봉사자, 코치 또는 운영시간 동안 학교 및 교육구 내, 또는 교육 환경에 있는 기타 인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금지한 성적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1. 불쾌감을 주는 결눈질, 성적인 추파나 제안
2. 불쾌한 성적 비방, 욕설, 위협, 언어적 학대, 경멸적인 코멘트 또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묘사
3.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성별, 성적인 행동, 성적 지향성, 또는 기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비하적인 성적 성격을 띤 원치 않는 행동 또는 코멘트
4.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말로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대화
5. 성적인 농담, 경멸적인 포스터, 메모, 이야기, 만화, 그림, 사진, 음란한 제스처 또는 컴퓨터도 만든 성적 이미지
6. 성적인 소문 퍼뜨리기
7. 하나의 성별이 지배적인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놀림이나 성적인 발언
8. 신체를 마사지하거나 움켜잡거나 애무하거나, 쓰다듬거나 스치듯 만지는 행위
9. 사람의 신체나 옷을 성적인 방식으로 만지는 것
10. 성별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학교 활동에 물리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11. 성적으로 도발적인 물체 전시하기
12. 교육법 48900(n)에 정의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또는 성적 강요를 포함하되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음
13. 데이트 폭력, 스토킹, 관계적 학대
14. 위에서 설명한 단어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전자 통신, 예를 들어 성적 사진, 이미지, 웹 페이지, 밴드(Reply), GIF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전화, 컴퓨터 또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사용하는 기타 테크놀로지가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음.
15. 교육구 직원이 글, 말 및 신체적 접촉에 근거하여 학생과 성적 관계 또는 성적 활동 또는 학생과 성적 친교에 관여했거나 제의하였거나 부추기는 행위. 어떤 상황에서는 교육구 직원이 학생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성적 암시로 취급될 수 있으며 성적 괴롭힘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상황에서 학생을 포옹하고 팔로 학생의 어깨를 감싸는 것과 같은 교육구 직원의 행동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성격의 어루만짐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6. 교육구 직원과 학생 간의 성적 관계
17. 교육구 직원과 졸업한 학생(이전에 학생이었던) 간의 성적 관계: 만약 (a) 학생이 교육구에 재학 중이었고 그 직원이 교육구에 고용된 동안에 교육구 직원이 은밀한 또는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b) 만약 교육구 직원이 교육 환경에서 그 행동을 추구한 경우; 또는 (c) 교육구 직원의 행동이 현재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18. 교육구 직원과 학생, 또는 이전 학생 간의 성적 관계는 타이틀 IX의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담당자는 교육구의 모든 학생에게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나이에 맞는 수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과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어떤 행위와 행동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성희롱 및 성폭력은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학생이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3. 학생이 타학생, 교육구 직원 또는 교육 환경에 있는 제3자에 의해 성적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우 즉시 교사, 교장/담당자 또는 접근 가능한 다른 교육구 직원에게 알도록 장려
4. 교장/담당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신고할 때, 학교 행정 책임자는 학생 및 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의 통합 민원 처리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를 통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절차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설명
5. 괴롭힘의 표정이 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하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 학생들이 방관하지 말고 자신이 목격한 성적 괴롭힘 발생을 신고할 것을 장려
6.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교육구의 조사 절차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담당자에 대한 정보
7. 해당하는 경우, 범죄 고발이나 OCR 민원을 접수할 학생 및 부모/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타이틀 IX 조정관

이 방침에 따라, 이사회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지시하며 민원과 조치에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며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구의 성적 괴롭힘 정책에 관련된 문의에 응답하는 타이틀 IX 조정관를 지명했습니다. 타이틀 IX 조정관은 민원을 조사할 다른 교육구 직원이나 제3자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IX 조정관
501 N. Crescent Way / P.O. Box 3520
Anaheim, CA 92803
전화번호: 714 999-5621
stout_l@auhsd.us

학생의 신고

자기가 성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거나 성적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은 누구나 그 행위를 교육구의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의 관찰과 신고

성적 괴롭힘 신고를 받은 교육구 직원은 즉시 그것을 타이틀 IX 조정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구 직원이 이러한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 신고 책임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대리인에 대한 신고

성적 괴롭힘 신고나 민원이 교장/교장 대리인/교직원의 상사,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 또는 민원, 신고 또는 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접수하는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신고는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누가 이 민원을 조사할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 기관의 사실 확인 결과 통보

만약 교육구 직원이 학생(다른 학교 또는 교육구의 학생 포함)과 이 규정에 명시된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 행위에 관계되었다는 사실 확인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은 사실 확인 결과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학생이 다른 학생(다른 학교나 교육구의 학생을 포함)과 이 규정에 명시된 성적 괴롭험이나 성폭력 행위에 관계되었다는 사실 확인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교육구 타이틀 IX 조정관은 사실 조사 결과 주변의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이 사실 확인 결과가 이 규정에 위배되는 성적 괴롭힘의 수준에 달한다고 판단한다면, 교육구는 즉시 교육 환경에서 그 성적 괴롭힘을 제거 조치를 실행하고, 교육 환경에서 이것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적 환경에 미친 영향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사실 확인 결과”에는 다른 공립 또는 사립 학교,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기관, 법원, 교사 자격 위원회, 또는 교육구에 제공된 사실 확인 결과로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교육구 학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포함됩니다.

기타 민원에 대한 옵션

학생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한다면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경우, 조사의 상태와 범죄 조사의 착수로 인해 임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교육구 타이틀 IX 조정관은 언제 조사가 재개할 것인지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미국 교육부의 민권국(OCR)에 성차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정책 및 규정의 집행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교육구의 성적 괴롭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외설적이며 모욕적인 낙서 지우기
2. 학생들, 교직원 및 부모/보호자에게 괴롭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트레이닝 제공. 교직원 대상 트레이닝에는 아동 학대 신고 및 타이틀 IX 준수에 대한 주제를 포함
3. 성적 괴롭힘에 관련된 교육구 정책과 규정 배포 및 요약
4. 학생과 관련자 기록, 부모/보호자와 공동체를 향한 학교의 대응 소통의 비밀 보장과 관련된 법 준수
5. 적법한 징계 조처
6. 적법한 구제책이나 교정 조처

비밀 보장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에 대한 모든 민원과 혐의 주장은 조사를 진행하고 차후 구제책이나 교정 조치를 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은 교육감이나 대리인과의 의논하여 교육구의 모니터링, 교육적 환경에서의 괴롭히는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고된 모든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 및 통지

교육구의 성적 괴롭힘 정책과 규정의 사본은 반드시,

1. 매 학년도가 시작할 때 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공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교육구와 학교 웹사이트, 주요 행정 건물 및 기타 교육구의 규칙, 규정, 절차 행동 강령을 게시하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3. 쿼터, 학기 또는 여름 세션이 시작할 때, 새로운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제공해야 합니다.

4. 학교나 교육구의 종합적인 규칙, 규정, 절차 및 행동 강령을 개진하는 학교나 교육구의 출판물에 실려야 합니다.
5. 학생 핸드북에 포함해야 합니다.
6. 새로운 교육구 직원을 채용했을 때, 학년도의 첫번째 쿼터나 학기가 시작할 때 교육구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교직원 기관들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교육법

200-262.4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48900	정학과 퇴학의 근거
48900.2	정학과 퇴학에 대한 추가 근거; 성적 괴롭힘
48904	학생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임
48980	기간 시작 시 통보

민법

51.9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 사업, 서비스 및 전문적인 관계
1714.1	미성년자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임

정부법

12950.1	성적 괴롭힘에 대한 트레이닝
---------	-----------------

규정집, 타이틀 5

3080	섹션 적용
4600-4687	통합 민원 처리 절차
4900-4965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비차별 규정

미국법, 타이틀 20

1221	섹션 적용
1232g	가족의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1681-1688	타이틀 IX, 차별

연방규정, 타이틀 34

99.1-99.67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106.1-106.71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에 근거한 비차별

0|사회

2001년 10월 25일

참조 검토일: 2023년 11월

개정일: 2019년 11월 5일

개정일: 2020년 12월 15일

개정일: 2022년 11월 17일

A

AR 8708

학생 – 성적 괴롭힘

본 행정 규정에 명시된 민원 처리 절차는, 1972년 교육 개정안 타이틀 IX에 따라 제기된 학생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성적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1 교육구 직원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학생이 참여하는 대가로 교육구의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의 약속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2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객관적으로 모욕적이어서 학생이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 3 20 USC 1092 또는 34 USC 12291에 명시된 성에 근거한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또는 스토킹

그 외 모든 성적 괴롭힘에 대한 민원은 BP 91200 통합 민원 처리 절차나 BP 8701.1 괴롭힘 방지에 따라 조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의 구체적인 선택은 신고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인이 별도의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BP 8701.1 조항을 준수합니다.

민원 접수

성적 괴롭힘 신고는 반드시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에게 직접 접수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조정관
501 N. Crescent Way / P.O. Box 3520
Anaheim, CA 92803
전화번호: 714 999-5621
stout_l@auhsd.us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타이틀 IX 조정관은 공식 민원 접수에 대한 절차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추정되는 피해자가 공식 민원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다 해도, 안전에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타이틀 IX 조정관은 공식으로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틀 IX 조정관은 타이틀 IX 규정에 따라 혀락이 된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공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정되는 피해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민원 처리 절차 과정 중 특정한 시점에서 타이틀 IX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식 신고인의 실제 또는 디지털 서명이 있는 공식 신고는 직접, 우편, 이메일 또는 교육구에서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타이틀 IX 조정관에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행위가 34 CFR 106.30에 정의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이틀 IX 조정관은 공식 민원 신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틀 IX 조정관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경우, 민원을 기각해야 하며 그는 신고인이 민원을 철회하거나 민원 내용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교육구에 통지한 경우, 피고소인이 더 이상 교육구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고용된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교육구가 민원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경우, 공식 민원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함에 따라, 타이틀 IX 조정관은 즉시 양측에 동시에 서면 기각 통지와 기각의 사유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주장하는 행위가 34 CFR 106.30에 정의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는 여전히 BP/AR 91200 - 통합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

타이틀 IX 성적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공식 민원 접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타이틀 IX 조정관은 징계나 처벌이 아닌, 그리고 다른 쪽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지원 조치의 가능성은 의논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즉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담, 과목 관련 조정, 시간표 변경, 쌍방 연락 제한, 경비 강화 및 캠퍼스의 특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이틀 IX 조정관은 신고인의 지원 조치에 대한 요청을 숙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긴급 퇴출

긴급 상황에서 교육구는 학생을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육구가 개별적인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학생을 제외하는 것이 제기된 혐의로 인해 학생 또는 다른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퇴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을 퇴출시킨 후 즉시 그 학생에게 통보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을 퇴출시킬 권한이 장애인법이나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섹션 504에 따른 학생의 권리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육구 직원이 피고소인인 경우, 그 직원은 공식 민원 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행정

휴무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해결 절차

성적 괴롭힘에 대한 공식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구는 책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중재와 같은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비공식인 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식 민원의 조사 및 판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구는 양측에 혐의 공개, 비공식 해결 절차의 요건, 비공식 절차를 철회하고 공식 고소 절차를 재개할 권리 및 기록을 보존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도 있음을 포함한 모든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함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공합니다.
2. 비공식 해결 절차에 대한 양측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3.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적 괴롭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해결 절차를 제공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식 고소 절차 / 조사

교육감 또는 지정 담당자는 타이틀 IX 조정관, 조사관, 결정권자, 또는 비공식 해결 절차의 중재자가 일반적으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해, 혹은 특정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해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이들에게 34 CFR 106.45에 따라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타이틀 IX 조정관은 다음에 대한 서면 공지를 양측 당사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교육구의 모든 비공식 해결 절차를 포함한 타이틀 IX 민원 처리 절차
2. 당시 알려진 충분한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성적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는 혐의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이 알려졌을 경우 이를 포함하며, 성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 그리고 사건의 날짜와 장소가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해당 정보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당사자들이 초기 면담 전에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사 과정 중에 교육구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최초 통지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면, 타이틀 IX 조정관은 양측 당사자에게 추가 혐의에 대한 통지 제공

3. 피고소인은 해당 혐의에 관해 책임이 없다고 추정되며, 책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소 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
4. 당사자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자문위원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며, 그 자문위원은 변호사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증거를 점검 및 검토할 능력에 대한 통지
5. 고소 절차 중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금지 통지

조사 절차 중, 교육구는 반드시,

1.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포함한 목격자 및 기타 유죄나 무죄 증거를 제출할 동등한 기회 제공해야 합니다.
2. 어느 쪽 당사자 조사 중에 혐의를 논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3. 모든 민원 처리 절차 중에,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자문위원과 함께 모든 관련 회의나 절차에 동반할 기회를 포함한 동등한 기회 제공해야 하며 이 자문위원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4. 모든 회의나 민원 처리 절차에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모두 자문위원을 선택 또는 동반하는 데 제한이 없으나, 교육구가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한, 자문위원가 처리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5. 초대했거나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당사자에게 참석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날짜, 장소, 참석자, 모든 조사 면담의 목적 그리고 기타 회의에 대한 서면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양측 당사자와 그들의 자문위원(있는 경우)에게 제기된 혐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전자 형식 또는 사본을 발송하고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고려할 서면 응답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기한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유죄 및 무죄 증거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목격자자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증거의 신뢰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8. 책임 소재를 결정에 앞서 최소 10일 전에 관련된 증거가 공정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과 자문위원(있는 경우)에게 검토 및 서면 응답을 위해 전자 형식 또는 사본을 발송합니다.
9. 당사자들에게 조사 보고서를 발송한 후, 결정권자가 책임 소재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자는 각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나 증인에게 묻고 싶은 관련된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그 답변을 제공하고, 추가로 제한된 후속 질문을 할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성적 성향이나 과거의 성적 행위에 관한 질문이나 증거는 관련이 없으나 다만, 해당 질문이나 증거가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과거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어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타이틀 IX 민원 처리 절차에서 허용되었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아니라면, 교육구는 주와 연방법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비밀 그리고/또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만이 교직원에 대한 것이라면, 타이틀 IX 요건에 상충되지 않는 한, 해당 교섭 단체 협약 아래 논의된 권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교육감은 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결정하기 위해, 타이틀 IX 조정관나 이 사건의 조사에 관계된 사람이 아닌 다른 교육구 직원 한명을 결정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결정권자는 피고소인이 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판결문을 발행하여 양측에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민원의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기한 연장과 이러한 조치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성적 괴롭힘의 모든 공식 민원에 대해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 사용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동일한 표준을 교직원에 대한 민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공식 민원에도 사용해야 한다. 판결문에 반드시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 34 CFR 106.30에 정의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 있는 혐의 사항의 식별
2. 당사자들에게 발송된 모든 통지, 당사자들과 목격자들과의 면담, 학교 방문, 기타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된 방법과 교육구가 민원 처리 절차로 심리를 한 경우, 실행한 심리를 포함하여 공식 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판결문까지 취한 절차적 단계 서술서
3. 판결을 뒷받침하는 발견된 사실
4. 사실에 대한 교육구의 행동 강령 적용에 관한 결론
5.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 교육구가 피고소인에게 부과한 모든 징계 및 교육구가 고소인에게 제공하게 될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 회복과 유지를 위해 고안된 구체책 여부를 포함한 각 혐의에 진술서과 혐의에 대한 근거
6.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위한 교육구의 절차와 허용 근거

이의제기(항소)

만약 당사자가 절차적 위법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이해 충돌이나 타이틀 IX 조정관, 조사관(들) 또는 결정권자의 편견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면 당사자 측이 교육구의 판결이나 공식 고소나 민원의 어떤 혐의를 기각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을 때 반대 측에 통보하고 양측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이의제기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이의제기의 결정권자는 34 CFR 106.45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그 사람은 책임 소재나 기각 판결을 내린 사람이나 조사관 또는 타이틀 IX 조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양측 당사자에게 결과를 뒷받침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합리이며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이의제기의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판결문을 발행합니다.
5. 판결문은 양측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의제기는 판결문의 받은 때로부터 수업 일로 계수하여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의제기의 근거와 이의제기를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이의제기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미국 교육부 민권국에 민원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로부터 수업 일로 7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제책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교육구는 고소인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책에는 앞서 언급된 “지원 조치” 섹션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비정계적 또는 비체별적이거나 피고소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회피하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정/징계 조치

민원 처리 절차가 완료되고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교육구는 위에 명시된 “지원 조치” 섹션에 명시된 지원 조치 외에 성적 괴롭힘에 관련된 피고소인에게 부담을 주는 징계나 다른 조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4~12학년 학생의 경우,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징계에는 정학 및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절차가 완료된 후, 어떤 학년의 학생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의 활동에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교장이나 교육감은 즉시 학생을 정학시키고 퇴학을 제안해야 합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받은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기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이나 학교로의 전학
2. 부모/보호자 면담
3. 학생에게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제공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을 교육 모니터링 팀에 회부
6.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 또는 교과연계활동 및 기타 특전 참여의 제한합니다.

직원이 성적 괴롭힘 또는 보복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육구는 해당 법률 및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록 보관

교육감이나 지정 대리인은 모든 성적 괴롭힘 신고 사례 및 타이틀 IX 조사의 기록, 책임 판정 결과, 해당되는 경우 오디오 또는 시청각 녹음 및 녹취록, 부과된 징계 조치, 고소인에게 제공된 구제 조치, 이의제기 또는 비공식 해결 절차 및 그 결과, 그리고 34 CFR 106.44에 따라 이루어진 대응 조치 등을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지정 대리인은 타이틀 IX 조정관, 조사관(들), 결정권자(들) 및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진행한 사람의 교육에 사용된 자료를 7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교육구가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대중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교육법

200-262.4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48900 정학과 퇴학의 근거

48900.2 정학과 퇴학에 대한 추가 근거; 성적 괴롭힘

48985 주 언어로된 통지, 보고, 진술서 및 기록

민법

51.9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 사업, 서비스 및 전문적인 관계

1714.1 미성년자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임

정부법

12950.1 성적 괴롭힘에 대한 트레이닝

규정집, 타이틀 5

4600-4670 통합 민원 처리 절차

4900-4965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비차별 규정

미국법, 타이틀 20

1092 성폭행의 정의

1221 법의 적용

1232g 가족의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1681-1688 1972년 교육의 타이틀 IX 개정안

미국법, 타이틀 34

12291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정의

미국법, 타이틀 42

1983 권리 박탈에 대한 민사소송

2000d-2000d-7 1964년 민권법의 타이틀 VI

2000e-2000e-17 1964년에 개정된 민권법, 타이틀 VII

연방규정, 타이틀 34

99.1-99.67 가정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106.1-106.82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에 근거한 비차별

법원 결정 판례

도노반 대 파웨이 통합교육구 사건 (2008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4권 제567면

플로레스 대 모건 힐 통합교육구 사건 (2003년,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리스 대 제퍼슨 교육구 사건 (2000년, 제9연방항소법원, 208 F.3d 736)

데이비스 대 먼로 카운티 교육위원회 사건 (1999년, 미국 연방대법원, 526 U.S. 629)

겔서 대 라고 비스타 독립교육구 사건 (1998년, 미국 연방대법원, 524 U.S. 274)

법정대리인 케이트 S.에 의한 우나 대 맥카프리 사건 (1998년, 제9연방항소법원, 143 F.3d 473)

도우 대 페탈루마 시 교육구 사건 (1995년, 제9연방항소법원, 54 F.3d 1447)

관리 자원:

CSBA 간행물

트랜스젠더 및 성 정체성 비준용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정책
요약 보고서, 2014년 2월

안전한 학교: 학생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전략, 2011년 발간

미국 교육부 민권국 간행물

캠퍼스 내 성적 부정행위에 관한 질의응답 2017년 9월간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사례 및 새로운 실행 관행 2016년 5월

친애하는 동료에게 편지: 타이틀 IX 조정관 관한 안내문

성적 괴롭힘: 학문적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9월,

개정 성적 괴롭힘 지침: 학교 직원, 다른 학생 또는 제3자에 의한 학생 대상
괴롭힘, 2001년 1월,

웹사이트 :

CSBA: <http://www.csba.org>

캘리포니아 교육부: <http://www.cde.ca.gov>

미국 교육부 민권국 :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

AUHSD 이사회 규정 8200 섹션 504 아래 학생 선별과 교육

AUHSD 이사회 규정 8200-R 섹션 504 아래 학생 선별과 교육

관리이사회는 장애를 지닌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교육구 관할 경계 내에 거주하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선별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자격을 갖춘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1973년 연방 재활법의 섹션 504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일반 교육 또는 특수교육과 더불어,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에 상응하도록 그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104.33)

또한, 자격을 갖춘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방과 후 운동, 학교 간 체육활동, 기타 비학문적 활동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구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104.37)

섹션 504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교육감 또는 지정 담당자는 해당 학생과 그 부모/보호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적 보호 조항 및 필수 고지를 제공하는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선별, 평가 또는 배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이에 부속된 행정 규정의 “절차적 보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섹션 504 심리를 진행할 자격을 갖추고 기꺼이 진행할 공정한 심리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담당자는 교육구와 고용 또는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지만 다른 어떤 직책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적 참조:**교육법**

49423.5 특수한 신체 건강관리 서비스

52052 책무성 -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학생 세부그룹

52060-52077 교육구 책무 운영 계획안

56043 특수교육, 일정/기한

56321 평가 - IEP 수립, 학부모 통지 및 동의

규정집, 타이틀 5

3051.12 건강 및 간호 서비스

미국 연방 법전, 제20편

1232g 1974년 가족의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1400-1482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미국 연방 법전, 제29편

705 정의 - 직업 재활법

794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미국 연방 법전, 제42편

12101-12213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규정집, 타이틀 28

35.101-35.190 주와 지역 정부서비스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연방 규정집, 타이틀 34

104.1-104.61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금지, 특히:

104.1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이행 목적

104.3 정의

104.32 위치 및 통지

104.34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104.34 교육적 환경

104.35 평가 및 배정

104.36 절차적 보호 조항

104.37 비학업적 서비스

104.7 책임 직원 - 고충절차

법원 판례

크리스토퍼 S. 대 스탠리스라우스 카운티 교육청 사건 (2004) 384 F.3d 1205

관리 자원:

CSBA 간행물

IDEA 및 섹션 504에 따른 당뇨병을 지닌 학생의 권리, 정책 요약서, 2007년 12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법률 자문위원회

캘리포니아 K-12 공립학교 내 당뇨병을 지닌 학생의 권리에 관한 법률 자문, 2007년 8월

미국 교육부 민권국 간행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지닌 학생에 대한 동료에게 보내는 서한 및 자료집, 2016년 7월

장애를 지닌 학생의 보호: 섹션 504 및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2015년 10월
친애하는 동료에게 보내는 서한, 2013년 1월

장애를 지닌 초중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2008년 ADA 개정법 관련 동료에게 보내는 서한 및
문답 자료, 2012년 1월

장애를 지닌 학생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의
요건, 2007년 9월

웹사이트 :

CSBA: <http://www.csba.org>

캘리포니아 교육부: <http://www.cde.ca.gov>

미국 교육부 민권국 :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

이사회

이사회 승인: 2019년 07월 11일

E

교육감은 다음 직책을 교육구의 504 조정관으로 지명하여 1973년 연방 재활법 섹션 504 의무를 이행합니다. (34 CFR 104.7)

504 조정관

학교 정신 건강 및 웰니스 디렉터

애나하임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501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714)999-7734

504Coordinator@auhsd.us

정의

섹션 504의 이해를 위해 아래 용어와 문장들은 다음에 명시된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이란 장애를 지닌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적 필요를 비장애인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에 상응하도록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규 교육 또는 특수교육과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학생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법적으로 부과가 허용된 수수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4 CFR 104.33)

“장애를 지닌 학생”이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학생, 해당 손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 학생, 또는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28 CFR 35.108)

“신체적 손상”이란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감각기관, 호흡기계(발성 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면역계, 혈액계, 림프계, 피부 및 내분비계 등 하나 이상의 신체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장애 또는 질환, 외형상의 손상, 또는 해부학적 결손을 의미합니다. (28 CFR 35.108)

“정신적 손상”이란 지적 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정 학습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28 CFR 35.108)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대다수 일반인의 기능 수행 능력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손작업 수행, 보기, 듣기, 먹기, 자기 전 준비하기, 걷기, 서기, 물건 들기, 몸을 굽히기, 말하기, 숨쉬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사고하기, 쓰기, 의사소통하기, 직업 수행하기 등과 같은 주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요 생활 활동”에는 일상적인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신체 기능이 포함됩니다: 면역계, 특수 감각 기관 및 피부의 기능, 정상적인 세포 성장, 소화기계, 배변 및 방광 기능, 신경계, 뇌, 호흡기계, 순환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혈액계, 림프계, 근골격계, 생식기계의 기능과 같은 신체 계통의 기능뿐 아니라, 개별 장기의 작용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손상이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보조수단의 개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감 수단(mitigating measures)이란, 개인이 손상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하며, 다음에 한정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약물, 의료 기구 또는 장비,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합리적인 조정 또는 보조적 수단 및 서비스, 학습된 행동 조절이나 적응된 신경학적 조정, 정신치료, 행동치료, 물리치료 등. (42 USC 12102; 28 CFR 35.108)

의뢰, 선별 및 평가/검사

장래를 지닌 학생의 의뢰, 선별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구에서 취한 모든 조치와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 기타 교직원, 교육 모니터링 팀이나 지역사회 기관은 섹션 504에 따라 장애를 지닌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학생을 교장이나 지정 담당자, 또는 교육구의 504 조정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뢰를 받으면, 교장, 지정 담당자, 504 조정관 또는 학생의 장애로 의심되는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은 의뢰를 심사하여 평가와 검사가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 영역을 포함한 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학교 기록 검토,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교사, 기타 전문가,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상의, 그리고 학생의 필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교장, 지정 담당자 또는 504 조정관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러한 결정과 아래 “절차적

보호조항(Procedural Safeguards)" 섹션에 명시된 대로 절차적 보호조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3. 만약 학생의 필요가 섹션 504 아래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구는 최초 배정 전에 학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4 CFR 104.35)

섹션 504에 대한 적격성을 위해 학생에 대한 최초 검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교육구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의 평가 절차는 검사 및 기타 평가 자료가 다음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104.35)

- a. 해당 평가와 자료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 제공자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인력이 실시해야 합니다.
- b. 해당 평가는 교육적 필요의 특정 분야를 평가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단일한 일반 지능지수(IQ)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c. 검사는 감각, 운동 또는 언어 기능의 손상이 아닌, 해당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의 적성, 성취도 또는 기타 능력을 반영해야 하며, 단, 해당 기능이 검사의 측정 대상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섹션 504 서비스 계획과 배정

장애를 지닌 학생에 대한 서비스와 배정 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1. 배정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사 데이터에 대한 검토하기 위해 504 팀이 소집되어야 합니다. 504 팀은 학생, 평가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배정 옵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34 CFR 104.35) 여기에는 행정 책임자, 학교 카운슬러, 학생의 교사 한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직원(예: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리저널 직업 프로그램 강사),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학생이 포함됩니다.

평가 데이터의 해석과 배정의 결정함에 있어, 팀은 적성과 성취 검사, 교사의 추천, 신체적 상태,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적응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팀은 이러한 모든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하고 34 CFR 104.34에 따라 배정 결성을 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104.35)

- 만약, 평가에 의해 학생이 섹션 504 아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면, 팀은 학생이 FAPE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편의 제공, 추가 지원 및 서비스를 명시한 서면 504 서비스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이 회의에 초대하고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만약 504팀이 학생을 위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팀 회의의 기록에 학생이 섹션 504 아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파악되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고 현재 특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 “절차적 보호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의 권리와 절차적 보호 조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추가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반 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학생은 일반 교육 환경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개별적인 필요에 가장 적절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4 CFR 104.34)
- 교육구는 선별, 평가 및 배정 절차를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일반적으로 평가에 동의를 받은 후 6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학생의 섹션 504 서비스 계획안의 사본은 학생의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의 교사와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교직원에게 계획안의 요건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교육구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다면,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나 지정 담당자는 학생이 전학 가는 새 학교의 교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학생이 새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계획안의 사본을 받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토와 재평가

504팀은 학생의 진척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가 적절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필요도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생의 섹션 504 섹션 서비스 계획안의 효과성을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504 아래서 장애를 지닌 모든 학생은 최소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필요에 대한 재평가는 차후 배정에 중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34 CFR 104.35)

절차적 보호 조항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교육구의 선별, 평가 또는 학생의 교육적 배정에 관련된 교육구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장애를 지닌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구의 조치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보호 조항과 더불어 모든 관련 기록을 점검할 기회와 그들이 참석할 권리가 있는 공정한 심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34 CFR 104.36)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섹션 504 아래 자녀의 선별, 평가 및 교육적 배정에 관련된 교육구의 조치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조치나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섹션 504 정당한 법적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정당한 법적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에 앞서,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들의 재량으로 교육구의 조치와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와 결정에 대한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조정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만날 적절한 행정 책임자를 지명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문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행정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섹션 504 정당한 법적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정당한 법적 절차 심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만약 행정 심사가 열린 후 심사의 완료 14일 이내에 504 조정관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요청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 b.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체 조치
 - c. 분쟁 해결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정보
2.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을 접수 후 30일 이내에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 그리고 504 조정관은 공정한 심리 담당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30일 마감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담당관을 선택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섹션 504 정당한 법적 절차 심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45일 마감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의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a. 법적 자문위원과 특수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섹션 504 아래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문제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사람을 동반하거나 조언을 받을 권리,
 - b. 서면 및 구두 증거를 제시할 권리,
 - c. 증인에게 질의하고 교차 검사할 권리,
 - d. 심리 담당관으로부터 결정과 결정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명시된 서면 판결문을 받을 권리

원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든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에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및 통보

교육감이나 지정 담당자는 섹션 504 아래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구의 고지 의무를 위한 적절한 단계를 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4 CFR 104.32)

리저널 직업 프로그램에서 섹션 504 계획 실행을 위한 절차

교육구는 섹션 504의 의미 내에서 장애를 지닌 교육구의 학생에게 리저널 직업 프로그램(ROP)에서의 FAPE 제공하기 위해 혼신합니다. 교육구는 섹션 504 학생들이 편의 제공, 지원,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ROP 과정의 혜택을 거부 당하거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차별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그들의 섹션 504 계획의 실행 및 기타 편의 제공, 지원 및 ROP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ROP 교육 행정 책임자가 포함된 학생의 섹션 504팀은 학생의 섹션 504 계획의 시행, 그리고/또는 ROP에서 제공된 과정에서 기타 적절한 편의 제공, 지원 및 서비스의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ROP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504 편의 제공 규정

ROP 과정 신청서는 학생이 섹션 504 계획이 있음을 명시할 것입니다. 섹션 504 계획이 있는 학생이 ROP 과정을 신청할 때, 학교의 커리어 지도 전문가(Career Guidance Specialist, CGS)는 학생의 섹션 504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생의 504 담당자와 ROP 교육 행정 책임자는 학생 및 학부모와 즉시 만나 (1)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에 있는 편의 제공, 지원 또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2) ROP 과정의 요건을 검토하고, (3) 섹션 504팀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추가의 편의 제공, 지원 또는 서비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과정 조건을 고려할 때 추가의 편의, 지원 또는 서비스가 요구된다면, 학생의 504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위해 즉시 ROP 교육 행정 책임자가 포함된 섹션 504팀 회의를 일정을 잡고 소집해야 합니다.

1. 학생의 현재 섹션 504 계획안이 ROP 과정에서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 편의 제공, 지원 및 서비스 검토

2. ROP 과정 설명과 그 과정과 연관된 조건 검토
3. 학생이 ROP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의 편의 제공, 지원 및 서비스 논의
4. 섹션 504 계획안의 실행 및 ROP 과정에서의 기타 편의 제공,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결정 문서화
5. 섹션 504 계획과 함께 학생이 ROP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섹션 504팀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 a. 해당 결정은 학생과 논의된 후,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에 문서로 기록됩니다. 교육구는 섹션 504 계획안의 사본과 섹션 504 절차적 보호 조항의 사본을 학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b. ROP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CGS나 지도 카운슬러는 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 c. ROP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ROP의 교육 행정 책임자는 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ROP 인력에게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 d.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은 ROP 과정 첫날부터 실행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이 ROP 과정을 시작할 때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ROP 교육 행정 책임자는 예상되는 실행 일정을 서면으로 학생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6. 현재 504 계획안을 가지고는 학생이 ROP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섹션 504팀이 판단하는 경우, 504팀이 논의한 대안적 편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또는 학생이 요청한 편의, 지원 및 서비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 a. 학생이 ROP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섹션 504팀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학생과 의논하고 그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의 비고란에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504 계획안의 사본과 회의록,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포함된 섹션 504 절차적 보호 조항의 사본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b. 만약 편의 제공, 지원 또는 학생이 요청한 서비스를 포함해 섹션 504 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섹션 504팀은 학생과 함께 섹션 504 계획안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 ROP 과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 c. 만약 섹션 504팀이 학생이 요청한 것과는 다른 수정된 학생의 섹션 504 계획안, 편의 제공,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의하는 경우, 섹션 504팀은 제공된 대안과 이 대안에 대한 학생의 수락 또는 거절을 기록할 것입니다.

분쟁 해결

만약 학생이 그들의 섹션 504 계획안 및 기타 편의 제공 또는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된 섹션 504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교육구의 섹션 504 정책에 명시된 절차적 보호 조항을 간구하거나 민권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OP는 섹션 504 계획안 그리고/또는 ROP 과정에서의 기타 편의 제공,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교육구의 조사 및 해결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개정일: 2024년 06월 13일

AUHSD 언어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은 ELD (영어 언어 발달)을 포함함으로 영어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일부의 프로그램에는 수학, 사회학 및 과학 교과목에서 영어로 된 특수 고안 학업 지도(SDAIE) 수업 전략 활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이 영어를 배우고 학년 진급과 졸업을 위해 연령에 맞는 표준 학업 성취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 조직적인 영어 집중(SEI) 프로그램: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생을 위해 고안된 교과과정과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학생에게 고안된 ELD 수업과 ELD 가 통합된 학년 수준의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 이중언어 몰입 (DLI) 프로그램: “양방향 몰입”이라고도 함. 높은 학업 성취, 모국어와 제 2 언어 숙련 및 타 문화 이해를 목표로 영어 원어민과 다른 언어의 원어민을 위해 모국어와 제 2 언어로 언어 학습과 교과목 수업을 제공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진입점이 있는데 AUHSD 에서는 중급의 지정/모국어 수준을 요구합니다.
- 세습(계승어) 언어 프로그램: 학생이 문해력과 학업 지도를 위해 영어와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모국어 구사 능력이 약한 학생이 언어 능숙도를 성취하고 학업 성취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 학년에서 8 학년 그리고 9 학년에서 12 학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한 방향 몰입 프로그램: 기존의 전통적인 세계언어 과목입니다. 우리는 미국 수어(American Sign Language, ASL), 아랍어, 불어, 일어, 한국어, 관어(Mandarin), 스페어, 베트남어를 제공합니다.
- 전학생 프로그램: ELD 또는 ELD 2, 언어 및 문해력 과정을 수강하여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이 충분치 않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생은 로제타 스톤 라이선스를 받을 것이며 토요일 언어 아카데미(SALA)와 여름 언어 아카데미(SLA)에 참여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당 30 명 이상의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어떤 학년이든지 20 명 이상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언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습득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는 가능한 한 최대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U.S.C. 제 6312 조 [e][3][A][viii][III]; EC 제 310 조 [a]).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안(LCAP)을 개발할 때 언어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C 제 52062). 만약 위에 명시된 프로그램들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insert LEA contact name and information]에게 연락하십시오.

학교가 모든 EL 학생들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영어학습자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를 학교의 EL 프로그램이나 EL 프로그램에 속한 특정 EL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의 EL 프로그램이나 특정 EL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상태는 여전히 영어학습자로 유지될 것입니다. 학교는 여전히 1964년에 제정된 공민법의 타이틀 VI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단계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EL 학생들의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평등한 교육의 기회법에서 교육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U.S.C. 제 1703 조 [f], 제 6312 조 [e][3][A][viii]).

대안 학교에 대한 공지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8501

다음 통지는 EC § 48980에서 요구에 따라 부모와 보호자에게 보내는 공지와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은 매해 3월 한 달 동안 각 출석 시설에 학생, 교사 및 방문한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는 두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법은 모든 교육구의 대안 학교 제공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58500 절은 대안 학교를 하나의 학교 또는 학교 안에서 다음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별 학급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 (a) 학생들이 자기 신뢰, 주도력, 친절함, 자발성, 지략, 용기, 창의력, 책임감, 그리고 기쁨을 계발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
- (b)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때 비로소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식
- (c) 학생의 자기 동기부여(의욕)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을 자신의 시간에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러한 관심사는 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습과제 선택 교사의 발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발생할 수 있다.
- (d)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이 교육 과정과 그 주제를 함께 발전시킬 기회의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기회는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 (e)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지속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가 대안 학교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카운티 교육감, 이 교육구의 행정부 및 출석 기관의 학교장은 귀하의 정보를 위해 이에 관련된 법의 사본을 갖추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관리 이사회가 각 교육구에 대안 학교 프로그램 수립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교육법 51390~51939)
부모/보호자를 위한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 편지



ANAHEIM UNION HIGH SCHOOL DISTRICT

Learning With Purpose: College and Career Ready

THE CALIFORNIA HEALTHY YOUTH ACT (EDUCATION CODE 51930-51939) COMPREHENSIVE SEXUAL HEALTH AND HIV PREVENTION EDUC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 (교육법 51930~51939)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

학부모께,

캘리포니아 주 법과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에 따라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7학년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때 적어도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시행해야 합니다.

수업은 반드시 학생들이 부모, 보호자 혹은 신뢰할만한 성인들과 인간 성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수업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하며, 나이에 적합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염, FDA가 승인한 HIV와 성적으로 전달되는 전염병(이후:STI) 예방법과 치료법을 포함한

HIV와 STI에 관한 정보

-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임신과 HIV 및 다른 STI를 예방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정보와 성행위를 미루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
- HIV와 AIDS에 관한 사회적인 관점에 관한 논의
- 성적 그리고 생식 건강 관리 자료 이용에 관한 정보
- FAD에서 승인한 예방법, 임신의 결과, 태아 관리, 신생아 안전과 관련된 법을 포함한 임신에

관한 정보

-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피해를 포함한 정체성과 성별에 관한 정보
-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상황을 피하는 것에 관한 정보

질문이 있거나 교과서나 시청각 수업 교재를 검토하기 원하시면,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cde.ca.gov/ls/he/se/에서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California Healthy Youth Act,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1930-51939)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 법에 의해 귀하는 자녀를 이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자녀가 종합 성 건강 혹은 HIV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래 명시된 주소를 이용하여 교육분과 부교육감에게 서명 요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서는 학교가 시작될 때나 적어도 종합 성 건강 단원을 시작하기 2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Jaron Fried, Ed.D

교육분과 부교육감

Educational Services
501 Crescent Way/ Post Office Box
3520 Anaheim, CA 92803-3544
Tel: 714-999-3557 – Fax: 714-520-9754